

2024년 전문연구기관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4년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지원사업 『전문연구기관지원(울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위치한 지자체 전문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 (지원규모) 직접지원
 - * 사전협의를 통해 울산TP 보유 장비 및 인프라로 지원 가능여부 검토 필요
- (지원기간) 2024. 9. ~ 2024. 12. (4개월) / 상시접수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대상) 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입주한 에너지관련 전·후방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세부위치 붙임 5. 참조)

3. 세부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건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	- 제품(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로하는 장비활용 지원 등	10건
애로기술 컨설팅	- 신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기술컨설팅, 자문 등 - 신규진출 기업 애로기술 자문, 신사업 아이템 발굴 지원 등	10건

* 지원프로그램 중 기업별 1~2개 프로그램 선택하여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담당자 온라인(E-mail) 신청서 접수 및 담당자 협의 후 진행

* 직접지원으로 별도의 선정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지원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예정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1
	2. 사업자등록증	
	3.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2
	4.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붙임3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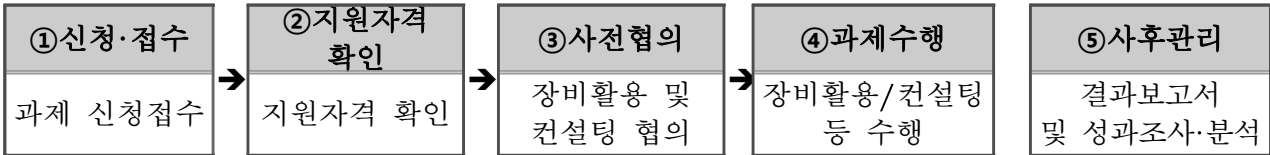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중단할 수 있음
- 기업책임자 및 담당자의 E-mail을 통해 평가일정 등 진행일정이 안내되므로, 신청서 및 계획서상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안내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붙임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7.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상시모집

○ (지원절차)



8.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현재 유사 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자(기업)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정보시스템 사전조회에서 제기된 문제기업의 경우
- 기타 서류상으로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기업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수 있음
- (선정제외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동법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해당

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교부취소, 제재 및 환수 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11. 접수처 및 문의처

구분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울산	(재)울산 테크노파크	천성민 주임연구원	052-219-0966	smcheon@utp.or.kr